



의안번호	제 2011 - 27 호
의 결 연 월 일	2011. 12. 19. (제38차 회의)

의
결
안
건

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
공청회 개최계획안 확정 의 건

제 출 자	운영지원단장
-------	--------

1. 의결주문

「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 개최계획안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양형위원회 규칙 제11조 및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양형기준안에 관한 일반 국민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양형기준 심의의결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공청회 개최계획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「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 개최계획안」을 의결하여 운영지원단으로 하여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

별지 설명자료와 같음

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 개최계획안

I. 목적

- 양형기준안에 대한 일반 국민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, 위원회의 양형기준 심의·의결 과정에 폭넓은 참고자료를 제공
- 양형기준 설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

II. 공청회 일시·장소

- 일시 : 2012. 2. 13.(월) 14:00 ~ 18:00
- 장소 :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제415호 중회의실

III. 공청회 참석자

1. 양형기준안 발표자

- 수석전문위원

2. 지정토론자

- 법관, 검사, 변호사, 교수 또는 기타 양형에 관한 관심과 식견을

갖춘 일반 국민 중에서 직역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선정

- 지정토론자의 수 : 5 ~ 8인

IV. 공청회 일정

- 개회 선언
- 양형기준안 발표
- 지정토론
- 종합토론 및 방청객 의견진술
- 폐회

V. 토론 주제

1. 대상 기준안

- 위원회 회의에서의 심의를 거쳐 제5차 공청회 대상으로 확정된 양형기준안(폭력, 교통, 증권·금융, 지식재산권범죄의 범죄군)

2. 토론 쟁점

- 개별 양형기준안의 유형분류 또는 형량범위의 적정성
- 구체적 양형과정에서 고려 또는 배제해야 할 양형인자
- 기타 양형기준 설정 시 참고할 사항